

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(국비-경상)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, 주거지원 임대주택 입주자 직업훈련비 지원		
사업비 (당해년도)	27,216천원	[국비]13,608천원	[사비]13,608천원
		기타 (예산 외) [구비]	[기타]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여성가족정책실	여성권익담당관	김순희 2133-5320	김향자 2133-5326	이정준 2133-5327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19예산액 (A)	2020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18,900) 37,800	(x13,608) 27,216	(xΔ5,292) Δ10,584	(xΔ28) Δ28
사회복지사업보조	(x18,900) 37,800	(x13,608) 27,216	(xΔ5,292) Δ10,584	(xΔ28) Δ28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0년 예산내역		
사회복지사업보조	○ 보호시설 직업훈련비 27,216,000원	=	27,216천원

과목구분	2020년 예산내역
------	------------

3 사업설명

사업목적

-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자립지원

사업근거

-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
- 여성가족부 여성 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

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연중
- 지원대상 :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, 주거지원 임대주택 입주자
- 사업수행주체 : 사회복지시법인(운영시설)
- 추진방법 : 출석률 80% 이상일 경우만 지원하며, 시설이 교육기관에 입금(청구서, 영수증 관리)
- 사업의 주요내용 : 실질적 취업 창업이 가능한 직업교육 및 진학 교육비 지원으로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직업교육비 또는 학원비, 교통비(필요시 1인당 월10만원)

추진경위

-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취창업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비 지원(2014년 1월~)

2020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27,216	
직업훈련비 지원	2020.01~2020.12	27,216	수시 재배정 지원

4 사업효과

최근 3년 추진실적

2017년도	○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 직업훈련비 지원(수시)
2018년도	○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 직업훈련비 지원(수시)
2019년도	○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 직업훈련비 지원(수시)

□ 향후 기대효과

○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자립지원 및 권익 증진

5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6	(x36,500) 73,000	(x-)	(x-)	(x36,500) 73,000	(x18,766) 37,532	(x-)	(x17,734) 35,468
2017	(x36,500) 73,000	(x-)	(x-)	(x36,500) 73,000	(x14,507) 29,013	(x-)	(x21,993) 43,987
2018	(x21,000) 42,000	(x-)	(x-)	(x21,000) 42,000	(x17,849) 35,697	(x-)	(x3,151) 6,303